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제3항)

○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구 문화센터를 활용한 소규모의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검인규정을 삭제·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2조(관람료)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함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매회별 좌석 수 120% 범위 내에서 발행하되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발행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과 관람권 발행 검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관람권 발행에 관한 것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조례 제22조 제2항 소정의 관람권 발행비용 부담과 검인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의 발행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문예진흥기금의 납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일면 의의가 있다고 보지만,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와의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인이란 어떤 내용을 검사했다는 표시로 찍는 일로서, “행정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는 행정규제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문예진흥기금의 납부에 대한 수단으로서 조례 제22조 제2항 소정의 사전 검인규정은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보며, 관람권 발행비용과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사항들은 사용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규제의 원칙)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